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병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872 발의연월일: 2021. 3. 18.

발 의 자: 안병길・김태호・유의동

이철규・김선교・윤창현

류성걸 • 권성동 • 이종성

정점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광명·시흥 지구의 토지에 공사의 직원들만 접근할 수 있는 미 공개정보를 이용하여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.

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에도 현행법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와 같이 국토개발 및 부동산 정책에 관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한 공공기 관은 다수 존재하고 있어, 이들 기관 및 소속 직원들의 불법 부동산투 기 등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 요가 있음.

이에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을 확대하고, 새만금개발공사의 임직원은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·비속의 부동산 소유권·지상권·전세권을 공사의 사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

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, 부동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을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의 공급에서 모든 주택이나 토지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로 확대함(안 제36조의20제1항).
- 나. 공사의 임직원은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·비속의 부동 산에 관한 소유권·지상권·전세권과 그 변동 사항을 공사의 사장에 게 신고하도록 함(안 제36조의21 신설).
- 다.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상향함(안 제74조의2 신설 및 제75조제2항 삭제).
- 라.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(안 제75조제4항 삭제 및 제75조제3항제3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의20제1항 중 "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"를 "주택이나 토지 등의 매매,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"로 한다.

제36조의21을 제36조의22로 하고, 제36조의2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6조의21(임직원의 부동산 신고 등)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부동산(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부동산,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포함한다. 이하 같 다)에 관한 소유권·지상권·전세권을 공사의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.

- 1. 본인
- 2.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)
- 3. 본인의 직계존속·직계비속. 다만,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 조부모, 외조부모,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.
- ②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있

- 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변동 사항을 공사의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공사의 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동신고의 방법, 절차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장에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4조의2(벌칙) ① 제36조의20제1항을 위반하여 미공개정보를 토지나 주택 등의 매매,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. 다만, 그 위반행위로 얻 은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 액을 5억원으로 한다.
 - ②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.
 - 1. 이익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- 2.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75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5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의2. 제36조의16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 용한 자
- 2의2. 제36조의21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·지상권·전세권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거부한 자제77조제2항 중 "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1.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
 - 2. 제36조의21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

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3. 제36조의21제2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임직원의 부동산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이 법 시행 이후 2개월 이내에 제36조의21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·지상권·전세권을 공사의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36조의20(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제36조의20(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의 금지) ① 공사의 임원 및 의 금지) ① -----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 택이나 토지 등의 매매, 그 밖 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 이용하게-----니 된다.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제36조의21(임직원의 부동산 신 고 등) ① 공사의 임원 및 직 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의 부동산(소 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 유하는 부동산, 외국에 있는 부 동산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관한 소유권·지상권·전세권을 공사의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1. 본인 2.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) 3. <u>본인의 직계존속·직계비속.</u>

다만,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 성과 외증조부모, 외조부모,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.

- ②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제1 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변동 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변동 사 항을 공사의 사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.
- ③ 공사의 사장은 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청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.
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 고 및 변동신고의 방법,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

(현행 제36조의21과 같음)

제74조의2(벌칙) ① 제36조의20제 1항을 위반하여 미공개정보를 토지나 주택 등의 매매, 그 밖 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 게 이용하게 한 사람은 1년 이

제36조의21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제36조의22(다른 법률과의 관계) (생 략)

<신 설>

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 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 한다. 다만, 그 위반행위로 얻 은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 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 다.

<u>상의 유기징</u>역 또는 그 위반행

- ②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.
- 1. 이익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징역
- 2.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유기징역

제75조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

제75조(벌칙) ① (생 략)

② 제36조의20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이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(倂科)할 수 있다.
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.
- 1. ~ 3. (생 략) <신 설>
- 4. 5. (생략)
- ④ 제36조의16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·2. (생략) <신설>

3. (생략)

제77조(과태료) ① (생 략) 제77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거부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1해당하는------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------

3
1. ~ 3. (현행과 같음)
3의2. 제36조의16을 위반하여
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
<u>하거나 도용한 자</u>
4.•5. (현행과 같음)
<u><삭 제></u>
5
<u>.</u>
1.•2. (현행과 같음)
2의2. 제36조의21제1항을 위반
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
산에 관한 소유권·지상권·전
신고를 거부한 자
3. (현행과 같음)

한다.	
<u> <신 설></u>	1.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
	거부 또는 방해한 자
<u> <신 설></u>	2. 제36조의21제1항에 따른 신
	<u>고를 거짓으로 한 자</u>
<u> <신 설></u>	3. 제36조의21제2항에 따른 변
	동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
	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자
	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